환불규정 동의서

커뮤니카학원의 활불규정은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유지회원협의회가 제정한 『※일본어교육기관의 유학생 수용에 관한 지침(한국어URL: http://www.nisshinkyo.org/j79.pdf)』에 준하며,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.

입학 전

- 1) 선고료: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2) 입학금: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,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3) 학비 등:
- ①재류자격인정서 교부 후, 일본대사관/영사관에서 비자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, 입학금, 수업료, 시설비,
- 활동비를 반환합니다. 영수증 및 일본대사관 발행의 교부불가통지를 제출해 주십시오.
- ②재류자격인정서 교부 후, 일본대사관/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영수증 및

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반납하면 수업료, 시설비, 활동비를 반환합니다.

입국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학한 학생이 중도 퇴학한 경우

- →신청선고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 학비 등은 하기 조건에 따라 반환한다. 단, 학비 등의 반환에 적용되는 단위는 각 학기*로 정하며 납입된 학비 중 퇴학 수속 수리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학비 등을 반환한다. 재학중인 학기에 관한 학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 각 학기의 마지막 날을 각 기일로 정한다.
- *커뮤니카 학원에서는 1 년간의 수업을 4 학기로 구분하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수는 180 시간이다.
- 1 학기의 수업일은 45 일이다. 각 년도의 실질적인 수업 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조할 것. 〈퇴학 수속 수리 조건〉
- · 대학,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- →진학처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복사본(원본제시) 및 퇴학 원서 제출, 학생증 반납. 이상으로 퇴학 수속이 수리된다.
- · 진학 이외의 재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- →재류자격 변경에 관해 본교에 사전 신고, 재류자격 변경에 충족하는 서류(고용개시일이 명기된 고용증명서·입적일을 알 수 있는 주민표 등)의 복사본(원본제시),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수리인(印) 복사본(원본제시) 및 퇴학 원서 제출, 학생증 반납. 이상으로 퇴학 수속이 수리된다.
- · 출국(귀국)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- →출국(귀국)편 티켓 복사본(원본제시) 및 퇴학 원서 제출, 학생증 반납. 이상으로 퇴학 수속이 수리된다. 〈반환 시기와 조건〉
- ㆍ대학,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- →조건 : 진학처의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어 있을 것.
- 시기: 본교에서 재학증명서를 확인한 일자의 익월 말
- ㆍ진학 이외의 재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- →조건 : 해당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으로의 재류자격 변경 증인(證印)을 받은 상태일 것.
- 시기 : 본교에서 재류자격 변경 증인을 확인한 일자의 익월 말
- · 출국(귀국)으로 인해 중도 퇴학하는 경우
- →조건 : 여권의 출국 도장 및 목적지의 입국 도장의 확인이 가능할 것.
- 시기 : 본교에서 여권의 일본 출국 도장 및 다음 목적지 입국 도장을 확인한 일자의 익월 말 또한, 실제 반환시 은행 입금 등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므로 양해 바랍니다.